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63

2023. 12.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문성호 의원(찬성자 1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문성호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이 지닌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 시합의 장으로서 대중화 및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대중화, 관광 상품화 등 시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결련택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결련택견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인 ‘결련택견’이 지닌 무형문화 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결련택견 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1) 현황

○ 결련택견의 모체인 택견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제76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택견 전수 지역을 충청북도 충주시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국내 택견 단체는 각기 역사·정통성과 규모 등의 우위를 주장하며

대한택견회, 한국택견협회, 결련택견협회, 위대태껸회 등 4개의 분파(分派)로 나뉘어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는 총 6개임.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인 대한택견회는 서울시체육회 정회원 단체로 등록되어 시장기·협회장기 대회와 행정 보조비 등으로 약 2천만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택견 관련 단체 현황 >

연번	소관 기관	단 체 명
1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택견원형보존협회 (2002)
2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 (2000)
3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대한택견협회 (1991)
4		사단법인 위대태껸회 (2017)
5		사단법인 국제문화유산택견연맹 (2022)
6		사단법인 택견진흥원(2023)
7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대한택견회 (2016)
8	문화재청	한국택견협회 (1999)
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2013)

○ 결련택견은 서울지역에서 전승된 택견의 겨루기 형식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고, 개인에게 국한된 기예인 택견과 달리 단체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차이가 있으며, 공동체적 전승 가치를 견지하기 위해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전승공동체[1]로 2022년 12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6호(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8호)로 지정됨.

- 결력택견은 서울시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전 유관단체를 통해 무형

1) 전승공동체: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6개 단체 중 3개 단체에서 지정 반대 의견이 있었고, 문화재위원은 결련택견의 전승가치에 대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결련택견' 지정에 대한 유관단체 입장 >

단체별	의견	내용
A	찬성	·보유단체나 보유자가 없는 종목으로 지정되므로 택견인에 대한 지원과 종목 발전에 기여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
B	찬성	·택견 종목의 발전을 위해 필요
C	찬성	·서울이 택견의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충주에 건립된 바, 서울의 택견 전승이 필요함
D	반대	·서울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부각하며 별도로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E	반대	·문화재 발전은 인정하지만 변형된 형태를 국가무형문화재 외의 또 다른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은 불가 ·국가무형문화재 범주 안에서 전승과 보존 가능
F	반대	·결련택견은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전통 택견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음. ·국가무형문화재 범주 안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타당

(2) 조례의 필요성

○ 서울지역 무예로서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대중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에 등록된 무형문화재가 55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 종목단체가 개별 조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다만, 현재 국회에서 「택견 진흥법안」(김윤덕 의원 발의, 2023.7.7.)이 계류 중이며, 택견의 전승 본거지인 충주에서 택견 진흥조례가 이미 제정·운용되고 있어, 서울시도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음.

다. 주요 조문별 검토

(1)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3조)

○ 제정안은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대중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결련택견의 진흥계획 수립(안 제4조)

○ 제정안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결련택견의 활성화 ▸결련택견에 참가하는 택견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과 지원 ▸결련택견 관련 교육·홍보·축제·행사 등 ▸결련택견의 관광 상품화 ▸결련택견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지원 ▸결련택견의 관광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결련택견이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관련 기록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무형문화재의 지정 가치와 위상이 높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결련택견의 날 지정(안 제5조)

○ 제정안은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결련택견의 날로 정하고 행사추진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결련택견의 날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번호를 근거로 만들었으나, 조례로 명시하기에는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국회 계류 중인 「택견 진흥법안」(김윤덕 의원 발의, 2023.7.7.)에 따른 택견의 날은 6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상징성을 감안하고 중앙정부 등과 일관성을 유지해 결정해야 할 것임.

(4) 결련택견의 지원 및 위탁(안 제6조~안 제7조)

○ 제정안은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결련택견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련택견 진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외 보급과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함.

라. 종합검토의견

○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대중화를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세계화에 이바지하는데 공감하며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과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로서 지속적인 전승 활동 등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 진흥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63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규남, 김용일, 김형재, 김혜지, 박상혁,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병윤,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이 지닌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 시합의 장으로서 대중화 및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대중화, 관광 상품화 등 시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결련택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결련택견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결련택견이 지닌 민간 무예 문화로서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련택견”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고시된 공동체 종목으로서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 문화를 말한다.
2. “결련택견 전승공동체”란 서울시에 소재하고 택견을 전승·보급·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며,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결련택견이 서울의 고유한 무예 문화인 택견 경기의 장으로 대중화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써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결련택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결련택견에 참가하는 택견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련택견 관련 교육・홍보・축제・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결련택견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사항

6. 결련택견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련택견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련택견의 날) ① 시장은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결련택견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련택견의 지원) ① 시장은 결련택견 전승공동체가 결련택견 관련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과 활성화 등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서 번 호	2023101600000046

미 첨 부 사 유 서 (1 호)

요 청 인 :	문성호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6.		
회 신 일 :	2023.10.23.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5조(결련택견의 날), 제6조(결련택견의 지원), 제7조(사업의 위탁) 등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에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관광체육국에서 기추진[1]하는 유사사업이 있어 확인결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용역을 통한 진흥계획 수립 시 추가재정 소요가 있을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437,500천원(연평균 287,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87,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5조(결련택견의 날)의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세계인의 날 행사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행사운영비 17,500천원을 준용
- 제6조(결련택견의 지원)의 지원은 타 지자체(충주시 등)의 사업[2](붙임 참조)을 참고하여 택견대회 및 시민 대상 택견교실 등 운용비 지원을 가정하여 비용을 추계
- 제7조(사업의 위탁)은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을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1)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체육정책과-27509(2022. 11. 8.)

2) 충주시 체육진흥과 택견관련 예산 중 일부분 준용 - 세계택견대회 지원(200,000천원),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 지원(20,000천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10,000천원),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지원(40,000천원)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437,500천원(연평균 287,500천원)

- 총비용 = 택견의 날 행사 운영비 + 결련택견 지원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택견의 날 행사 운영비(안 제5조)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87,500
	결련택견 지원 비용 (안 제6조)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소계(b)	287,500	287,500	287,500	287,500	287,500	1,437,500
□총 비용(b-a)		287,500	287,500	287,500	287,500	287,500	1,437,500

○ 택견의 날 행사 운영비 = 87,500천원

= 연간 택견의 날 행사운영비 × 5년

= 17,500천원 × 5년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세계인의 날 행사운영비(17,500천원) 준용

※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 세계인의 날(5.20)을 기념하여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 마련 /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

○ 결련택견 지원 비용 = 1,350,000천원

= 연간 결련택견 지원비용 × 5년

= 270,000천원 × 5년

- 충주시 체육진흥과 택견관련 예산 준용

※ 세계택견대회 지원(200,000천원),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 지원(20,000천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10,000천원),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지원(40,000천원) 준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붙임] 2023년 충주시 전통무예진흥(택견) 관련 예산

(단위: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합 계	270,000
세계택견대회 지원	200,000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 지원	20,000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	10,000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지원	40,000

자료 : 2023년 충주시 예산서 발췌